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4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76)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6)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3)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4)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3)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7)
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9)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2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5) 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76) 3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6) 3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3) 3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4) 3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3) 3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6) 3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2) 3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7) 3
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8) 3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9) 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3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4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4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남구·울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휘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은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수 위원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천준호 간사님, 김승수 간사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운영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립 입법심의회관입니다.

(인사)

심의회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10시40분)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천준호 간사님과 김승수 간사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76)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6)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3)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4)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3)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7)
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9)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위원장 한병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천준호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조금 전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앞당기고 인사청문회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공직을 열거한 것을 국회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 개정에서 추가되는 인사청문 대상을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천준호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천준호 위원** 예.

○**위원장 한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오늘 원래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하였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온갖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이 87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거나 소요 사태라는 등입니다.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국가폭력에 희생 대신 민주 명령과 유가족에 대한 가해이자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이는 토론회 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전에 이진숙 의원에게 토론회 취소를 요청하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원 3700명이 당 윤리위원회에 이진숙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징계는커녕 오늘 회의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시키자는 민주당의 협의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토론회 직후에는 토론회가 부적절했다,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의 편향적인 권한 남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다른 4명의 현역 의원 중징계를 결정하면서도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은 이진숙이라는 반발이 당 내에서부터 나왔습니 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 오직 극우세력만 남기려는 것처럼 보입니 다. 이러니 오늘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적반하장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역사 왜곡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김승수 간사님 말씀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정현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우리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말들이 그동안 진짜 차고 넘칩니다.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이런 진짜 뒷골목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한민수 의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대표를 가지고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막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 석상에서 박충권 위원을 보고 ‘전체주의국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3만 4000의 탈북민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동료 의원에게 ‘히틀러, 전두환’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연사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이진숙 의원의 5·18 역사 쿠데타를 국가가 즉각 막아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이진숙 의원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사퇴를 촉구하자 ‘국회의원 자격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하겠습니다. 누가 평가하느냐고 묻기 전에 무엇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무너뜨렸는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숙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답했습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보상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그날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습니다. 5·18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포럼을 열 용기는 있으면서 정작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결로 밝힐 용기는 없었습니까? 역사를 흔들 용기는 있으면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용기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광주시민과 국민들이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답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를 비롯한 20개 단체가 이진숙 의원의 체명을 추구하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픔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 이진숙,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이진숙 의원 자신의 과거가 답했습니다. 방통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묻자 이진숙 의원은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끊임없이 혼드는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미 답했습니다. 5·18은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역사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시 혼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법이 답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역사왜곡을 방조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의 결론도 같습니다.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즉시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마땅합니다.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역사왜곡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18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진숙 의원의 5·18 역사 쿠데타를 즉각 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우선 한병도 위원장님의 눈틀막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한병도 뭐라고요?

○김민전 위원 눈틀막이요. 이 PT를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시고요. 제가 이게 통상은 의사진행……

○김민전 위원 제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다시 끊어 주세요. 말씀하실 시간 확보해 주시고요.

제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김민전 위원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이 PT 자료는 2024년 1월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그 당시는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요—국회 토론회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라고 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발제자는 김광수 씨인데요. 김광수 씨가 이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의 결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통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조선 반도에서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갖는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 전쟁의 결과는 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화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첫째, 주적을 철회해야 한다. 주적을 철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통일 이행 전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적이 누구냐 묻는 쉼린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토론회의 김광수 씨의 생각을 상당 부분 민주당의 후보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지요.

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14차 10기 최고인민위원회의 발언을 두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발언, 이 인민위원회의 발언에서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결심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진짜 속내는 전쟁을 결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에 대한 대응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결심하는 것이다, 또 북한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다 이런 얘기 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를 두고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과연 학문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에 대해서 누가 선협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하다 못해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해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또 우리의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수정주의가 유행했지만 결국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수정주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해석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역사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눈틀막이라고 그러셨는데 위원님, 통상 의사진행발언에서는 PPT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고 대신 국정감사 대체토론에서는 충분히 P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드리고 동영상……

○김민전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이것을 이용하셨지만 이게 의사진행발언 내용인가 이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요.

○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그건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국정감사와 대체토론에서는 PPT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장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김민전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징계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되는 게 옳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통상 대부분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구두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건 뭘 막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정감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트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눈틀막이 아니고, 국정감사 대체토론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문금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은 학술회의의 외피를 썼을 뿐 이미 역사적·법적으로 확인된 5·18 민주화운동을 다시 왜곡과 폄훼의 대상으로 끌어내린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막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막말 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자리를 국회의원이 직접 주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견해 차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도 역사왜곡 중단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학문의 자유에는 역사왜곡의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술회의라면 새로운 사례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인된 5·18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학술이 아니라 역사왜곡의 정치적 무대일 뿐입니다.

다.

둘째, 국회가 역사왜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국회에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을 다시 소묘로 부르는 행사가 열렸다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이진숙 의원 개인의 일탈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하고 해당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시 재단할 수도, 극단적 이념의 도구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역사왜곡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국회의 이름으로 5·18을 다시 상처 입히는 일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5·18만 되면 무릎 꿇고 반성하는 형식적 쇼를 멈추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이러한 역사왜곡 중단해 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전용기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한병도 그러실까요?

그러면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이 한 사람의, 이진숙 의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상당히 극우화될 수 있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 보면 ‘그랬으니까 당신네들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원식 의장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마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잘난 국민이 없고 못난 국민이 없습니다. 잘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고 못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건 나쁜 얘기가 이런 것도 아니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만 국회의원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국민의 대표 할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그것 다 한 사람의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와서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누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누가 국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전당이 바로 민의의 전당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러한 장을 만들었다 해서 이것을 극우화시키고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우리가 5·18을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오도가 돼 있다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5·18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기본 원리, 국가의 기본 원리에 그 아이덴티티를 헌법에 잡아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고 또 많은 해석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한다고 그러면 저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못 하게 막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민의의 전당의 권리 자체를 훼손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틀을 깨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다수의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특정 정치 세력이 5·18을 부정하고 극우화시키는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전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징계 촉구 결의안을 상정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국민의힘 전체가 극우화 프레임에 갇힐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진숙 의원 징계 촉구 결의안은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는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행사라고 폄훼할 수 없습니다. 지금 5·18은 헌법전문에 넣자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헌법에 들어갈 만큼 그 정신이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는데 그 역사를 다시 증명하자고요? 결국 극우화 프레임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5·18을 폄훼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라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5·18 정신을 모욕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허화평을 부릅니까?

○김민전 위원 부른 게 아니라 왔다잖아요.

○전용기 위원 그거 온 거 아닙니까? 전두환 비서실장을 그 자리에 불러 가지고, 전두환 면죄부 토론회입니까? 그런 토론회를 주최한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광주 정신을 전면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넣자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국민의힘을 극우화 프레임에 넣고자 함이 아닙니다. 5·18 정신을 모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허화평을, 전두환 비서실장을 국회로 부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징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1980년에 ‘광주작전’이라고 불리는, 그 전두환이 광주작전이라면서 실행했던 거를 2026년에 국회에서 재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자신 있게 말씀 주시려면 이러한 토론회를 주최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거쳐 주셔야 국민의힘도 우리는 5·18 정신을 모욕하지 않고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

기 때문에 징계 촉구안 결의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김준형 위원님 말씀 먼저 듣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발언을 준비 안 했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상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극우 프레임 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의하시면 극우 프레임은 그냥 끊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막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부정하고 같은 동일 선상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전 위원님, 저는 한 학자가 세미나 중에 돌발 발언하는 것하고 이진숙 의원이 처음부터 의도와……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우려와 아주 치밀하게 의도해서 사람들을 정하고 역사왜곡을 준비한 것과는 달리 표현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김민전 위원님이 백골단 부르신 게 의도가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이진숙 케이스하고 다르게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구별만 하셔도 이진숙 의원은 제명 처분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전은수 위원님 말씀 듣고 윤용근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은수 위원** 전은수입니다.

지금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께서 5·18 토론회 개최 전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공식 입장을 냈었습니다. 부적절하고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우리당이 동의한 적도 있다, 모든 근대사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데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한 헌법에 아직 수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리고 국가 법률에서 이미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 및 군사 반란으로, 광주 시민들의 항쟁을 헌정 질서 수호 행위로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두환 비서실장 허화평 12·12 군사 반란,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 처리 조치로 구속됐다가 무소속으로 나와 출마했다가 당선됐으나 다시 유죄판결받으면서 의원직까지 상실했는데요.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보면 맨 앞줄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줄에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설명으로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윤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한번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한병도** 끝나고 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우리 국가가, 특히 운영위원회가 이런 일로 이렇게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저는 참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지금 이진숙 의원 관련해서 학술토론회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학술토론회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검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6·25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5·18이 됐든 뭐가 됐든 4·19가 됐든 앞으로 학술토론회 할 때마다 국회가 그러면 내용을 검열할 것입니까? 그 내용 검열해서 정체성이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그것 다 제명할 겁니까? 학술토론과 일반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되는지 분리되는지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민주당 김준환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징계를 했습니까?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동료 의원을 향해서,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땅을 밟은 탈북한 3만 4000여 탈북민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김일성 만세운동하던 사람이라고 외친 그 김준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명확하게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회가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 이분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목숨 걸고 북한 이탈, 북한 체제를 부정하면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 그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분들을 마치 김일성 찬양론자처럼 하는 그런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징계했습니까? 그래서 제명 처분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보고 자기 허물은 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자기 허물은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헐뜯고 국회가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김민전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앞에서 백골단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전용기 위원이 저를 향해서 백골단이라고 고함친 장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자회견 주선을 할 때는 사전적으로 저에게 백골단을 조직하겠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회견 도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5시간 만에 기자회견 철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기자분들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잘못되었다라는 생각하에 기자회견 철회문을 돌렸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백골단이라는 게 결코 조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자회견 했던 분들이 경찰에 고발되고 했습니다만 다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 중의 한 분은 지금 미국 국무부장관이 임명한 이스트웨스트위원회(East-West Center)의 거버너(Governor)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이라고 공격을 하시지

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문을 보내 와서 주선한 것이었고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돌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을 철회했고 그리고 사실상 그들이 고발되었지만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에 의거한 정치 공격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김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운 위원** 여러 국힘 위원님들께서 학술적 토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런 표현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왜곡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학술적 토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미 역사적으로 압도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고 동시에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 역시 역사적 왜곡이자 혐오 표현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신 토론회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에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하신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1997년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했던 것을 대법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고 판결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살해했던, 진압했던, 폭력적으로 가해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소요 사태라고 하는 책임이 모호한 형태의 발언으로 돌려서 당시에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소요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학술적 토론이고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일종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동원해서 역사적 왜곡이나 우리 특정 지역 국민들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하는 것은 이진숙 의원의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논의지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있었던 사안들을 동원해서 몰타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장종태 위원님까지만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종료, 왜 그러냐면……

○**김미애 위원** 저도 2 대 1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끝까지.

○**위원장 한병도**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계속 여당 위원님들만 반복돼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장종태 위원님 말씀 듣고 김미애 위원님 토론하고 이주희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분씩이니깐요.

○**장종태 위원** 장종태 위원입니다.

짧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토론회에 나와서 한 발언 내용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인의 생각도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공동 주최해서 이름을 올린 그 이름은 분명히 명패가 아닐진대 왜 이런 것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공동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당에서도 만류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5·18을 소요 사태라고 부르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5·18 사건은 전두환 군부세력들이 결국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쿠데타적 사건인데 이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교도소를 다녀온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런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지금에 와서 내 의견과 다르다, 모른다 그렇게 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좋고 토론의 자유도 좋습니다. 다만 자유를 누리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명 조치가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역시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닌 만큼 오늘 그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전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절차고 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본질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그러나 이 토론회가 학술적 성격의 토론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비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또 그와 다른 의견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의 영역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이진숙 의원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제명까지 이르러야 될 만큼의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서 과연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이진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이 말씀하신 24년 1월에 윤미향 의원의 토론회에서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발언,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첫째로 주적을 철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다음, 최근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인 박충권 의원에게 대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 운동하던 사람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윤리위 회부하고 징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따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 두고 그 의원의 발언, 언행을 가지고 윤리위에 회부할 성격의 일이지 학술토론회에서 다른 사람이 한 발언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하면 토론회 개최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일일이 다 검열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의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윤리위에 회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저는 논쟁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이주희 위원님 발언 듣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과방위도 그렇고 당의 여러 논평들을 통해서도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진숙 의원에게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참 외람되게도 성함이 나왔는데요 김준환 의원께서는 본인의 실수로 인한 발언에 대해서 그 즉시 사과 하셨습니다. 이진숙이 사과했습니까? 단 한 번도 동료 의원을 비롯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경계가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지금 학술, 학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이전에도 많이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학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그 주장을 반복하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5·18에 민간인 학살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이 아닙니까? 그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온몸으로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것이 5·18 특별법이고요.

그날 있었던 여러 발제자들의 발언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모든 발언들이 5·18에 대해서, 그 술한 학살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비난하고 왜곡하는 5·18 특별법 위반 발언들이었습니다.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행법들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진숙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현행법들이 벌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 나왔는데요 그날 토론회 누가 주최했습니까? 이진숙 의원입니다. 그날 발언들 그 자리에서 곳곳이 앉아서 들으면서 그대로 용인한 사람, 그대로 생중계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형사법은 바로 이런 행위,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조하도록 한 그 행위를 명백하게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진숙 의원은

그날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공범적 행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헌법 그리고 국회법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지금의 대한민국국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서글픕니다. 이건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도 결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오늘 여야 간사는 이것 관련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직권으로 내일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이 위원장에게 직권으로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런 필요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김기웅 김미애 김민전 김승수 김 윤 김준형 김태규 김한규 문금주 박균택
박정현 서미화 윤용근 윤종오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정점식 천준호 천하람 최수진 한병도

○출장 위원(2인)

김성희 최은석

○청가 위원(1인)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원 장석립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안도걸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2026. 8. 21.
박충권	이상희	국민의힘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37)

이상 2건 7월 30일 회부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4)

8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3)

8월 14일 회부됨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2026. 8. 14. 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05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1)

이상 2건 8월 18일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80)

이상 2건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8월 24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
는 통보가 있었음

○요청서 회부

2025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협조 요청

(2026. 5. 29. 정부 제출)

(2026. 8. 1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요청)